

2023년 시설사업분야 일반직 공개채용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및 서류전형 등 일정공고

「2023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시설사업분야 일반직 공개채용」
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및 서류전형 등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26일

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

1. 필기전형 합격자 안내

-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채용홈페이지(<https://dpfcs.saramin.co.kr>)에서 합격 여부 개별 확인

2. 서류전형 안내 : 2023. 5. 4.(목) 13:30 ~ 15:00

- 제출대상 : 필기전형 합격자 전원
- 제출장소 : 대구 엑스코 서관 3층(대구 북구 엑스코로 10)
- 제출서류 : [참고_서류전형 제출서류] 참조
- 서류전형 불합격기준
 - 제출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 - ※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지정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응시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
 - 응시원서에 가점내역을 제출서류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
 - ※ 제출서류보다 응시원서에 낮게 기재한 경우 필기전형 가산점에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.

3. 인성검사 안내 : 2023. 5. 4.(목) 15:10 ~ 16:20

- 검사대상 : 필기전형 합격자 전원
- 검사장소 : 대구 엑스코 서관 3층(대구 북구 엑스코로 10)
- 세부일정

| 시 간 | 구 분 | 비 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5:10 ~ 15:30 | 본인확인 및 검사안내 | 15:10 까지 입실완료 |
| 15:30 ~ 16:20 | 인성검사 실시 | |

- 준비물 ※ 미 지참 시 응시가 불가합니다.
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 전 여권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중 하나

※ 2020. 12. 21. 이후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필기도구 :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(OMR 답안 작성용)

※ 수정테이프, 수정액, 수정스티커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
■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: 2023. 5. 9.(화) / 채용 홈페이지

☞ 면접전형 일자 : 2023. 5. 11.(목) 예정

☞ 서류전형 불합격자 및 인성검사 미 응시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

4. 기타사항

○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이 실시되며, 인성검사 미 실시자의 경우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합니다.

※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.

○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, 지정한 신분증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신분증 미 지참 시 인성검사 응시가 불가하며,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- 시험장 내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오니,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공고 일정은 공단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해당전형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(<https://dpfcs.saramin.co.kr>) 질문하기 게시판 또는 공단 총무인사팀(☎ 053-603-112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 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, 주민번호의 경우 뒷자리는 블라인드하여 제출 >

| 구 분 | | 내 용 |
|-----|---------------|---|
| 공 통 | 주민등록초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채용 공고일(2023. 3. 24.) 이후 발행분 - 주소변동사항, 병역사항 포함 |
| 대상자 | 국가(기술) 자격증 | - 국가(기술)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|
| | 경력증명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련 분야 경력 증명서(해당기관 발행) ※ 해당기관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납부 확인서, 근로소득 원천수납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경력입증이 가능해야함 |
| |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| - 국가보훈처 발행 |
| |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| - 통일부 등 발행 |
| | 장애인 증명서 | -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|
| | 다문화가족증명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족관계증명서 - 국적취득자(부 또는 모)의 기본증명서(이전 국적 등 상세사항 포함하여 발급) |

※ 국가(기술) 자격 취득 사항,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하며, 명칭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

※ 위 사항 외 기타 자격사항을 인정하는 서류는 별도 제출하여야 함